

【붙임】 「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	2025. . .	
연월일	(제 회)	

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O O O (국방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군인이 사망한 후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진급된 경우의 기준 소득월액은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개정됨에 따라,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군인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추서진급한 경우에도 진급한 것으로 보아 봉급월액 증가분을 가산하도록 개정(안 제11조 제4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4항 중 “봉급월액이증가한”을 “봉급월액이 증가(군인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진급의 경우에도 봉급월액이 증가한 것으로 본다)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급여액 산정의 기준일 등) ① ~ ③ (생 략)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 진급, 보직변경 등으로 <u>봉급 월액이증가한</u> 후 해당 연도에 상이연금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 우 그 기준소득월액은 「군인연 금법 시행령」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 한 금액으로 하고, 순직유족연 금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기준소득월액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산정 한 금액으로 한다.	제11조(급여액 산정의 기준일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<u>봉급</u> <u>월액이 증가(군인사법 제30조</u> <u>제1항에 따른 진급의 경우에도</u> <u>봉급월액이 증가한 것으로 본</u> <u>다)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	
연 락 처	(02) 748 - 6851